

2012 이룸기획포럼 새 로 고 침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 최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

2012 이름기획포럼
새로고침

■ 순 서

내 용

발제 표정선(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토론 1. 김주희(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토론 2.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질의 응답 및 토론

【발제】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표정선(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목 록 》

I. 들어가며

II. 본론

1. 성매매 여성들의 위험 경험

- 1) 살인에서 절도, 성폭력까지 -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 2) 상담사례를 통해 본 성매매 여성들의 위험경험
 - 가. 진상, 합의되지 않은 성적서비스 강요
 - 나. 성폭력 피해와 고립된 공간에서의 위험
 - 다. 성구매자, 스토키, 애인... 그 경계에서 당하는 괴롭힘
- 3) 위험상황의 누적과 자살

2. 위험 경험에 대한 대응

- 1) 개별적으로 구성된 안전지침
 - 가. A의 안전지침
 - 나. B의 안전지침
 - 다. C의 안전지침
- 2) 폭력 피해와 ‘불법’ 성매매 사이에서

3.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해외사례 : 호주, 성노동자를 위한 안전지침

- 1) 위험의 요소
- 2) 개인안전수칙과 업주의 책임
- 3) 진상 프로그램(Ugly Mugs)
- 4)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
- 5) 호주 사례의 시사점

Ⅲ. 대안적 논의

I. 들어가며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성매매라는 구조적 피해자의 틀에 머물러 있거나 주체적 자기결정권자로서의 성노동자라는 담론 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의 현실은 각각의 정체성을 경유하면서 채워지고 있으며,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거나 성매매 일을 그만둔 여성이든 상관없이 ‘성매매’에 부여된 사회적 차별에서 자유롭기 힘든 현실에 놓여 있다. 2009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에서 발간한 「성판매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보고서는 이러한 복잡다단한 사회적 차별 양상을 드러내고자 했던 보고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적 현실에,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이외의 사회적 개입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 같다. 성매매 구조에서 경험하게 되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문제들에 주목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적 역량에 주목하는 것임과 동시에 법이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지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1년 포항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연쇄적인 자살, 2010년 청량리 성매매 업소의 여성 살해사건, 2011년 창원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에서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하는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위험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지, 위험상황에서 제대로 법적 보호는 받고 있는지를 살펴본 자료는 전무하다. 거의 매년 성매매 종사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범죄피해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지만,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외에, 성매매에 종사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현실에서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있어, 일하면서 위험과 마주하는 상황은 매우 일상적이다. 또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또 한번 복합적인 사회적 차별과 마주한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여성들이 불법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은 이들이 위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성매매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여성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일할 때 숙지하고 있어야 할 안전 가이드라인’ 과 같이 위험상황을 예방할 지침일지도 모른다. 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성매매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업주, 그런 상황을 방치한 사회적 환경에 전가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매매를 지속

가능한 직업군으로 판단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논의이다. 이것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어도, 즉 성매매 여성으로 살고 있어도 안전한 삶의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기본적 인권 개념에 기반한 문제제기이다.

요약하자면, 이 보고서는 이미 기사화된 보도자료와 상담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성매매 여성들이 일하면서 어떤 위험상황과 마주치고 있으며, 그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개별적 전략, 그리고 공동체의 전략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매매라는 불법행위자라는 이유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가에 대한 문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때문에 법적 보호시스템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에 어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자료수집방법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노래방도우미’, ‘살인’, ‘폭력’ 등으로 검색한 최근 4-5년 동안의 기사자료와 2010년, 2011년 상담자료를 토대로 성매매 여성들이 처한 위험상황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3명의 여성 A, B, C의 인터뷰를 통해 위험경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성매매 업소에서의 위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당사자의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터뷰이 A, B, C의 기본 사항

인터뷰	나이	업소종류	일한 기간
A	54	성매매집결지	9~10년
B	34	안마, 집결지, 룸살롱, 티켓다방 등	17년
C	26	룸살롱	미파악

그리고 호주 성노동자 단체 RhED(Resourcing health & Education in the Sex Industry)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성노동자 안전가이드라인’ 과 ‘성노동자들의 성폭력 피해’ 와 관련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해외 성노동자 단

체의 자료를 분석한 이유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일하는 현장을 바탕으로 마련된 ‘안전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매매 산업 특성상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 어려운 한계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제한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이르지만,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몇 가지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II. 본론

1. 성매매 여성들의 위험 경험

1) 살인에서 절도, 성폭력까지 -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¹⁾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종사 여성은 성매매집결지와 같은 전업형 성매매에 4,917명이 일하고 있고, 유흥주점·무도유흥주점·비알콜음료점·노래연습장운영업·이용업·마사지업소 등 겸업형 성매매 알선가능업소에 고용된 여성 137,331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2010,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즉 14만여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대한 성산업의 틈바구니에서 14만여명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단지 ‘성매매 근절’, ‘탈성매매’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처우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나 실태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살인 피해나 연속적인 자살처럼 극단적인 사건이 되어야 겨우 사회적 주목을 받곤 한다. 2011년 하반기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발간한 「여성과 인권」에서는 기사 검색을 통해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의 죽음’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던 성매매 여성들의 사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최근 3년간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

1)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연월	내용
2009.8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40대 성매매 여성 살해된 채 발견
2009.12.4	태백시 황지동 한 여관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5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2009.12	대전 유천동 원룸에서 업주와 마담의 감금 및 구타에 의해 2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2010.4	전남 여수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여성이 살해된 채 암매장
2010.7.30	서울 청량리집결지 한 업소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3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2010.12.11	전주 덕진구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30대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모텔 베란다에서 발견
2011.10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 의해 성매매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

출처: 2011년 하반기「여성과 인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를 하면서 갖은 위험상황에 노출될 것이라는 예측은 <표1> 에서처럼 1년에 1회~3회 가량의 극단적인 살인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 이 뿐만 아니라 ‘노래방 도우미’, ‘여성안마사’, ‘출장안마사’, ‘티켓다방’ 등으로 기사 자료를 검색하면, 성매매 일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범죄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살인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2> 는 최근 4년간 성매매 일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범죄피해 사례를 모아 놓은 것이다.

<표 2> 2008년~2011년 여성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연월	지역	내용	기사 출처
2008.1	부산	2명의 가해자가 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로 모텔에 투숙한 뒤, 출장안마사를 불러 현금 35만원을 빼앗고 청테이프로 손과	MBC 2008.1.30

		발을 묶은 뒤 집단 성폭행	
2008.3-4	목포, 광주 등	모텔에 차배달 나온 티켓다방 여종업원을 흥기로 위협하여 돈을 뺏거나 성폭행 한 사건이 총 4건이 발생함. 그 중 한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이용, 티켓다방 여종업원의 알몸사진을 찍고 '현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겠다' 고 협박	광주 뉴시스 2008.4.28
2008.12-2009.1	대전, 충남, 충북, 경북 등	2개월간, 다방 여종업원을 상대로 강도살인 1건, 강도·성폭행 7건, 강도 10건 등 총 18차례에 걸쳐 흉악범죄가 발생, 가해자는 50대남성	뉴시스 2009.2.15
2009.2	광주	모텔에서 다방여종업원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감, 여성들의 알몸사진을 찍음.	경향닷컴 2009.2.12
2009.7	서울	노래방 손님으로 온 가해자가 19살 노래방 도우미를 차안에서 목졸라 숨지게 한 뒤, 경기도 시흥에 암매장	MBC 2009.7.12
2010.1	경남 통영	손님으로 온 가해자가 '노래방에 같이 가자' 는 부탁을 거절한 주점 여주인을 칼로 위협해 돈을 뺏음.	경남도민일보 2010.1.29
2010.1	경남 마산	손님으로 온 가해자가 노래주점 여주인과 도우미를 칼로 찔러 살해	경남도민일보 2010.1.29
2010.1	경남 포항	모텔에서 커피주문 뒤,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갈취	경북일보 2010.2.1
2010.1	전남 목포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한 남성이, 다방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유기	연합뉴스 2010.1.13

2010.3	충남 천안	모텔에 차배달하러 온 여종업원을 위협해 성폭행한 후 금품 갈취	뉴스스 2010.3.11
2010.4	부산	2005년 6월부터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업주가 여종업원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함. 성매매 알선과 더불어 임금 9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	연합뉴스 2010.4.7
2010.4	광주	모텔에 커피배달 온 여성을 흥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옷을 벗겨 손발을 결박한 뒤 현금 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음.	문화일보 2010.4.26
2010.5	경북 김천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봉사료로 시비가 붙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 공원에 시신 매장	매일경제 2010.5.7
2010.9	경남 산청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기 위해 모텔로 유인 후 히로뽕을 탄 맥주를 먹임. 모텔로 데려온 오토바이맨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수에 그침.	문화일보 2010.10.8
2011.1-2	경남 통영	① 모텔에 커피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거절하자 흥기로 허벅지 등을 찔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휴대폰을 빼앗음. ②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해 여종업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3만원을 훔침. 돈을 돌려달라는 다방 여종업원의 얼굴을 때리고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 ③ 모텔에서 다방 여종업원과 성매매 후, 흥기로 위협 폭행한 후 현금 45만원을 빼앗음.	뉴스스 2011.2.14
2011.5	울산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알게 된 도우미 여	부산일보

		성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목 졸라 살해	2011.5.17
2011.7	전북 전주	가해자가 모텔로 출장안마사를 불러 흥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뉴시스 2011.9.2
2011.11	경남 창원	가해자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도우미 여성을 모텔에서 술 마시고 목을 졸라 살해	경남도민일보 2011.11.7
2012.3	전북 김제	다방 여종업원을 모텔로 유인해 흥기로 위협하고 성폭행	김제 뉴시스 2012.3.15

최근 4년간의 성매매 종사 여성의 범죄 피해를 보여주는 <표 2> 를 보면, 노래방 도우미가 살해당한 사건(2011, 울산/ 2010, 김천/ 2010, 마산/ 2009, 서울), 여성안마사가 집단성폭행을 당한 사건(2008, 부산), 출장안마사가 특수강도 피해를 입은 사건(2011, 전주), 티켓다방 여종업원이 성폭행 피해를 당하거나 절도를 당한 사건(2008, 광주, 목포, 남원/ 2010, 경남 산청, 광주, 천안, 포항, 목포/ 2011, 통영/ 2012, 김제), 업주가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사건(2010, 부산) 등 각종 범죄의 사각지대에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살인, 절도, 강간, 폭행 사건에서 밝히고 있는 가해 동기는 ‘뚜렷한 동기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목졸라 살해’,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봉사로 시비가 붙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이다. 보도된 사건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티켓영업이나 성매매라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적 특성상, 위와 같이 보도된 사건들이 일부분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들은 범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범죄 가해자가 티켓다방, 출장안마사,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을 유인해내기 쉽다는 점, 티켓다방이나 출장안마사와 같이 업소 밖으로 나가 밀폐된 공간에서 범죄 가해자와 1:1로 대면해야 한다는 점, 인적이 드문 심야의 영업형태 등과 같은 환경에서 일한다는 점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범죄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된다. 절도범죄의 경우 가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여종업원을 노리고 있거나 신원확인이 어려운 모텔의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손님이라는 우월적인 위치,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1:1의 공간, 성매매라는 불법적 위치 때문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 등 범죄 위협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2) 상담사례²⁾를 통해 본 성매매 여성들의 위협경험

기사로 보도되는 범죄 사건들 이외에, 성매매 여성들이 일하면서 겪는 위협상황들은 더 다양하다. 아래 사례들은 2010년부터 2011년, 2년간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 [이룸]에 상담을 의뢰한 여성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 특히 안전을 위협했던 순간들을 추려서 모아본 것이다. 대부분의 상담에서 주된 문제는 성매매 업소에서 선불금 문제나 채무문제 또는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래에 소개된 사례는 단지 여성들이 업소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것을 그저 ‘지나간 이야기’로 말한 것들이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이 일하면서 어떤 위협상황이 닥쳤을 때, 외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가. 진상, 합의되지 않은 성적서비스 강요

〈사례1〉 “1:1 채팅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나기로 했다. 만나기 전에 성기결합 방식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서비스 해주기로 하고 만난 것이었는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10대 여성)

〈사례2〉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요구받았다. 나에게 약을 먹이고 역할극을 시키고, 변태성행위를 강요했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성구매자가 성매매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성기결합 방식의 성관계만이 아니다. 자신이 돈을 지불한 만큼 일정 시간만큼 여성의 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의 실현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이 예상하지 못한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성매매 업소의 다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유사성행위, 즉 성기결합 방식이 아니라 손이나 몸을 이용

2) 상담사례는 성매매피해지원 상담소[이룸]에서 법률 및 의료지원 과정에서 나온 여성들의 이야기들이며, 상담기록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했음을 밝힌다.

한 다양한 방식의 성적서비스를 실행하는 업소들이 나타나면서, 남성 성구매자의 요구는 당연하게 수용되는 반면, 성매매 여성이 가질 수 있는 통제력 또는 주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성구매자가 기대하는 성적서비스와 성매매 여성이 실행하는 성적서비스의 차이, 즉 합의되지 않은 성적서비스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이때 성매매 여성은 폭력적인 성구매자의 언행과 마주해야 하거나, 심하게는 성폭행과 폭행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사례 1> 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는 성매매 여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구매자의 행위들, 약을 먹이고 역할극을 시키거나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둘만의 공간에서 이것을 거부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그로 인한 위협을 홀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2차’(성매매)를 하러 모텔에 갔다가 ‘진상’을 만나 도망쳐 나온 이야기는 아주 흔하다. ‘진상’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다. 여성들은 자신이 합의하지 않은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모든 성구매자들을 ‘진상’이라고 뭉뚱그려 호명함으로써, 그 상황을 성폭력이나 폭력 등의 위협상황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재수없어 일어난 일’쯤으로 치부해 버린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위협상황, 위협감과 공포가 반복되고 또 누적된다.

나. 성폭력 피해와 고립된 공간에서의 위협

- <사례3> 티켓다방에서 일하면서 티켓영업을 나갔다가 강간 피해를 당한 사례
- <사례4> 노래클럽에서 일하다가 가게에 혼자 있을 때 손님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례
- <사례5> 키스알바를 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인데, 성매매 비용만 받고 도망나오다가 성구매자에게 잡혀서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 사례
- <사례6>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다가 성구매자로부터 흥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

성폭력 피해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경찰이나 지원서비스기관에서 성매매 과정의 성폭력 피해를 왜곡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 성구매자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강제적인 성관계마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성매매 공간에서 성구매자들은 어떤 방식의 성적행위도 용납될 수 있다고 믿지만,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잦은 성폭력 위협에 노출되며, 그로 인해 자존감의 손상이 반복되고,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심리·정서적 후유증이 쌓인다.

또 이 모든 것들은 여성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고립된 공간에서 일어난다. 앞서 보도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티켓다방, 출장안마사, 노래방도우미 등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내기 쉽고, 또 여성들은 성구매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1:1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된다. 성구매자의 우월적인 위치,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1:1의 공간, 성매매 여성이라는 불법적 위치 때문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 성구매자, 스토키, 애인... 그 경계에서 당하는 괴롭힘

〈사례7〉 노래방에서 일하는 한 여성에게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오게 하거나 폭행을 가했던 사례

〈사례8〉 유사성행위 업소에서 만난 성구매자가 지속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성관계를 강요. 이후 여성의 빚을 갚아주고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 여성을 괴롭히는 사례. 심지어 칼로 협박하고,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져 여성에게 전치 4주의 폭행피해를 입히기도 함.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면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음.

〈사례9〉 채팅으로 만나 1:1 성매매를 하고 난 뒤, 300만원의 거액을 지급하면서 한달동안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여성을 괴롭힌 사례

성매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성폭력이나 폭력,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앞에 제시된 범죄들의 주요 가해자는 손님으로 온 성구매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의 사적 공간에서는,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폭행의 가해자가 되거나 손님으로 만난 남자가 스토키로 돌변해 여성을 괴롭히기도 한다. 2010년 청량리 성매매집결지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의 가해자 또한 성구매자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여성을 괴롭혔던 스토키였으며, 살해 이유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즉 성구매자, 스토키, 애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또는 성매매 여성의 일하는 공간과 사적공간을 넘나들며 폭행과 성폭행, 협박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의 맥락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 책임지지 않는 업주들, 방관하는 사회

〈사례10〉 성매매 과정에서 진상 성구매자를 만나 도망쳐 나왔는데, 업주가 술값까지 여성에게 물리도록 했던 사례

〈사례11〉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소에 혼자 있을 때 손님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이를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례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 또는 여성이 소속되어 있는 보도방이나 소개소 사장들도 어떤 면에서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업소 사장이나 보도방 사장이 여성에게 “섬으로 보내버리겠다”든지 “전국 검찰, 법원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상황은 상담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사례에서 보듯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은 성매매 여성과 함께 하는 성산업인으로서 협력자라고 호명하면서 정작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물론 이들에게 자신의 업소에 소속된 여성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갖추기를 기대하기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고용주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로서의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다. 한국에서 성매매가 직업이 아닌 불법행위로 간주된 이상, 성매매 여성에게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추궁은 할 수는 있으나,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성매매 여성과 가장 긴밀하게 닿아 있으며 여성들을 통해 수익을 얻는 업주들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일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소속되어 있는 보도방이나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 규정을 강제할 필요성은 제기된다. 2004년 출장 여성안마사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던 연쇄살인사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던 이들이 다른 아닌 보도방 업주들이라는 사실³⁾은 이들이 여성들의 범죄피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또 안전을 담보해야 할 현실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주기자: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2012)의 저자인 주진우 기자는 2004년 유명철 연쇄살인 사건 당시 가해자를 검거한 이들이 경찰이 아니라 보도방 업주들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당시 보도방 업주들은 성매매를 하는 몇몇 출장 여성안마사가 실종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반복적으로 출장 여성안마사를 불렀던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해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사례12〉 성매매집결지 주변을 떠도는 동네건달이 수년동안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을 갈취하거나, 여성을 폭행, 강간을 일삼음.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례

성매매집결지의 경우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변인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차도 이를 방관한다. ‘동네건달’ 과 성매매 여성간의 가벼운 시비거리로 치부하거나 공권력조차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집결지에서 기생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며 돌아다니는 ‘삼촌’이라는 존재는 대부분 그 지역의 경찰과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여성을 보호하기는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

3) 위험상황의 누적과 자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일어났던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의 연쇄적인 자살⁴⁾은 성매매와 빛의 고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성매매 구조와 연관이 깊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여성에게 덧씌워진 사회적 낙인이 누적된다거나, 업주와 사채업자의 추심협박과 위협, 성구매자들의 폭력적인 행위와 같은 위험상황이 계속될 때, 그에 대한 탈출구로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성매매 여성의 자살은 일상적으로 위험 경험이 누적된 결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폭력은 성구매자나 업주가 욕하거나 소리지르는 것,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 괴롭힘과 집단따돌림, 신체적 공격들, 성폭력, 절도 등이다. 성매매 여성의 자살은 사회적 낙인감,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의미있는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외에도 고통에 대한 학습된 무감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한다(2011, 전준희). 자동차경주 선수, 외과의사, 소방대원, 군인, 경찰 등의 직업군에서는 어느 정도 상처에 대한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는데, 즉 죽음에 대한 무감각을 갖추고 있어서 위험이 상쇄

4)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포항에서 일했던 8명의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자살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빚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만 비춰졌으나, 실상 포항 유흥업소의 착취적인 성매매 구조, 즉 유흥업소 선불금을 빌미로 한 빛의 누적, 빚독촉,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겠다는 협박, 유흥업소와 경찰, 검찰의 유착, 폐쇄적인 지역성과 같은 성매매를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되지 않는 한 이런 직업군에서는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Thomas Joiner, 2011). 성매매 여성은 지속적인 위협상황에 노출되면서 고통과 상처에 무감각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보다 쉽게 자살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2. 위협 경험에 대한 대응

1) 개별적으로 구성된 안전지침

현재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3명의 여성 A, B, C의 인터뷰를 통해 일하면서 어떻게 위협을 감지하며, 또 위협상황과 마주칠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서의 위협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이 당사자의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인터뷰이 A, B, C의 기본 사항〉

인터뷰이	나이	업소종류	일한 기간
A	54	성매매집결지	9~10년
B	34	안마, 집결지, 룸살롱, 티켓다방 등	17년
C	26	룸살롱	미파악

성매매 공간에서 여성들은 성매매 행위자라는 ‘불법적 위치’ 때문에 어떤 위협 상황에서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가 성매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동료들 사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위협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방법들을 숙지하고 있다. 물론 이는 성구매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불가능성, 여성의 피해에 대한 업주의 무책임성과 같은 환경에서 나온 개별적 대응방법일 뿐이다. 또 그것이 여성들 사이에서 잘 공유되지도 않아서 많은 여성들이 그런 방법들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가. A의 안전지침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고 있는 A는 위의 <사례12>의 당사자로서, 2-3년간 “동네건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 A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앞에 술을 먹고 찾아와 욕하고 소리지르고, “용돈을 달라”며 돈을 갈취해 가고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A는 여러 번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했지만, 수사단계에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보복성 괴롭힘만 더 당했다고 한다. 그러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민원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에 임해주었고 그 뒤로는 자신을 괴롭히던 “동네건달”이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한다. 당시 A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몇 십년씩 굴러다닌 남자들”을 상대하는 것이 “공포” 그 자체였고, 그 사건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후유증도 겪었다는 것이다. A의 경험에서 보듯이, 피해 여성이 쉽게 신고할 수 없을 거라는 기대, ‘성매매 집결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대충 처리해도 된다’는 경찰의 차별적 시선은 성매매집결지를 탈법적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더구나 이 때 ‘동네 경찰서’는 이러한 탈법적 공간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이 공간을 벗어난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탈법을 견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일상적으로 자주 난폭한 성구매자와 대면하게 되는 상황에서 매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렵다. A는 손님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진상인지 아닌지를 첫인상을 보고 “감(감각)으로” 구분하거나 몇 가지 얘기를 나누어보고 손님이 “순한지, 난폭한지”를 판단하며, 그 느낌과 판단을 토대로 “손님을 받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구분하고 나서도 성구매자가 폭력적으로 돌변하면, 다시 돈을 돌려주게 되더라도 ‘어르고 달래기’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경찰서로 가게 되면 오히려 벌금만 물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님들도 뭐 갑자기 막 술을 먹고 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막 사나워져가지고 막 때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는 인제 그게 (경찰서로) 가면은 벌금도 나와야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 돈 돌려주고 달래서 보내고, 거진다(거의 다) 돈 돌려서 돈 주고 달래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도움 청할 데는 없어요. 청할 데는 없고 또 들어가서 방에 둘만 있는 상

황이라 어떨 때는 막 급히 뛰어나오려고 해도 문을 못 열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중략)그러고 이제 그 안에 아무도 없고, 들어갈 때 저는 밤에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나 혼자밖에 없거든요. 낮에는 방에서 자고, 그러면, 아무도 없다는 걸 (손님이) 알면 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안에서 좀 큰소리나면은 밖에서 “왜 그러냐” 고 소리 한번 쳐 주면은 좀 덜하고...(밖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그런 역할을 밖에서 해주시나요?) 좀 그런 게 있죠. 밖에서...

A가 일할 때 나름의 안전지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손님 가려받기’, ‘문제가 생기면 손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보내기’,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손님이 알게 하기’ 정도로 요약된다. 또 A는 가게 밖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지난 겨울, 성구매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

얘기하다가 안맞으면 가면(서로 안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당연히 (돈을 내)주는데, 관계 한참 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막 죽고싶냐고 난리치고 막 목 때릴라그러고 그래가지고 옷을 들고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앉아있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막 양쪽으로 얼굴을 정신없이 때리는거야 막 그래가지고 마침 바깥에도 아줌마가 앉아있었어요. 때리는 거 보고 막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하고 (손님을) 잡았지. 양쪽 딱 정신없이 때려가지고 여기가 부었어. 얼굴이. (큰일날 뻔했네요.) 얼굴을 그때 막 때려놔 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구, 갔는데 인제, 폭행 그거는 취급을 안 해줘. 거기서...(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성매매, 그걸로만 조사를 해가지고 벌금 45만원 났다구...(폭행으로 경찰서를 갔는데 성매매로? 근데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고소 하려면 한도 없어요. 이 남자들이 무조건 뭐 지 맘대로 안 해주면은 뭐 하다가도 돈 내 놓으라는 게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나마 양쪽 처벌을 받으니까 썩썩 주는 거지, 전에는 무조건 신고하면 자기네(손님)는 피해가 없잖아요. 신고하면 우리만 처벌받았지, 남자들은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A처럼 성매매 여성들은 안전을 위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불법’이라는 지대를 피하기 위한 전략도 요구받는다. 폭행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갔는데, 성매매 행위자로 여성이 처벌받는 A의 경우처럼, 법 집행에 있어서, 사건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보다 불법적 위치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전제가 더 우위에 있는 현실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가장 쉽게 폭력이나 범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집단이 된다.

나. B의 안전지침

B는 10대부터 성매매를 시작해 립살롱, 안마, 성매매집결지, 티켓다방 등 형태의 업소에서 10여년이 넘게 일했던 여성이다. B는 오랫동안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지만 동료들로부터 듣는 사건, 사고를 많이 당하지는 않았고, 다른 여성들에 비해 “운이 좋은 편” 이라고 말한다. 성구매자가 “욕하거나 소리지르는 것” 등과 같은 행위는 늘 반복되는 것이어서 그냥 넘어가는 일상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게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사건은, 7-8년전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할 당시 손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방 화장실에서 “목을 졸려 죽을 뻔했던” 사건을 겪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도, 그때 당시 충격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한동안은 일도 못하고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전 목졸린 거.(...) 00에서 일할 때 이제 손님이 데리고 나가서 노래방 같은데서 술 먹고 노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화장실을 갔는데 인제 따라와 가지고 화장실에서(어. 왜요?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없이...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아가씨도 다른 가게 아가씨도 여관에다가 병 다 깨놓고 나 갈테면 나가보라고 침대위에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 원래 그랬던 거 같아요, 아가씨들한테. 그때도 진짜 죽으라고 이렇게 목 졸려가지고 '아~ 나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까지 느껴지니까...밖에서 그 일행이, (내가)목졸려가지고 있는데 나중에는 힘이 빠지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가 갑자기 희미하게 누가 밖에서 '헹! 병 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었구나' 그 생각했는데 노래방 아줌마가 화장실에서 너무 안나오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하는 거냐' 고 그래서 그 노래방 아줌마도 맞고 그리고 나서 도망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게업주한테 말을 했어요. 했더니 나는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는 신고한다고 하니까 인제 일단은 거기가 성매매업소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죠. ‘하지 말아라. 해봤자 (그 손님) 찾지도 못하고 (신고)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성매매하는 그것도 같이 걸리고 하니까 너도 어차피 그거 빨간줄 올라가고 한다’ 그래 가지고 뭐 거의… 그냥 맞으면 그냥 맞는대로…

B도 아무 이유없이, 그리고 예측할 수 없었던 폭력피해를 입었지만, 성매매 처벌 때문에 신고하지 못했다. B에게 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이후의 “다른 아가씨들에 대한 폭력”을 막을 수 있고, 가해자의 지속적인 폭력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법에 호소하지 못한다.

B도 A처럼 일할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A와 마찬가지로 B도 성구매자의 첫인상을 보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장사를 하는 A와 다르게, 그 선택권은 업주에게 있으며, 여성이 ‘싫다’고 해서 2차를 나가지 않아도 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아가씨들 거의 초본데 아 이 사람은 좀 진상같아 가지고 ‘안할래요’ 그 말을 못하니까. 그냥 ‘안할래요’ 했을 때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되는데. 거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손님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조금씩 무슨 사고가 생겨요.(딱 느낌이 있는거네요?) 있는데, 하다 무조건 나가라고 하고…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좀 안 좋은 느낌… 손님 좀 이상하다고 싫다고 말을 해도 싫다고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니까…(그 선택권이라도 있으면) 그런 건 없어요.

두 번째는 ‘손님’으로 만난 사람과는 절대로 사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골손님”의 경우에도 “가게에서 만나는 것 이외에는, 아예 연락처도 주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가게에서는 자신 이외의 사람들이 있어서 안심이 되지만, 밖에서 ‘손님’을 만나는 것은 보다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난폭해 보이거나 무서운 느낌이 드는 손님”과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소에서 지정해 놓은 모텔로 가되, 모텔 안에 들어갔을 때, 도망갈 상황을 대비해 문을 절대로 잠그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모텔은 대부분 업소

에서 지정해 놓은 곳이어서, 모텔 주인이 성매매 여성임을 다 알고 있어서 대부분 1,2층에 있는 방을 준다. 그리고 CCTV를 통해 “벌거벗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 여성”을 보고, 모텔 주인이 숨겨주는 역할을 하며, 업주에게 연락이 간다고 한다. 이런 원칙들은 다음 C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 C의 안전지침

C가 개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안전지침은 보다 구체적이면서, 뒤 부분에서 분석하고 있는 호주 성노동자들의 안전지침과도 비슷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인터뷰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C의 안전지침

- 2차는 모텔로만 나간다 : 아무리 친한 단골이라도 손님의 집으로는 절대 2차를 나가지 않는다.
- 모텔에서는 무조건 1층에 방을 잡는다 : 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카운터에서 듣고 달려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운터에서 제일 가까운 방이 가장 좋다. 항상 이용하는 모텔이라면 미리 주인과 사용할 방을 약속해 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카운터에 말해서 1층 방을 요구한다.
- 모텔 방문을 절대 잠그지 않는다 : 손님 먼저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뒤에서 문을 닫고 따라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는 척만 한다. 방문, 현관문 모두 잠그지 않아야 위급 상황시 빨리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선제압을 한다 :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왜 룸에서와는 달리 태도가 돌변하냐?” 고 묻는 손님에게는 “오빠, 룸에서는 오빠 친구들과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내 손님이니까 최대한 서비스하는 거지만, 여긴 우리 밖에 없으니 그럴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할 것. 고분고분한 사람도, 만만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꼭 알린다.
- 집어던질 수 있는 물건(예: 모텔전화기)의 위치를 확인한다 : 위급한 상황에는 물건을 집어 던져서 큰 소리를 내야 한다. 모텔 내에 비치된 물품 중에는 전화기가 던지기도 좋고 부서지는 소리도 크게 난다.
- 익숙하지 않는 지역의 모텔로 2차를 갈 때는 꼭 모텔 주변의 큰 건물을 기억해둔다 :

주변 지리를 잘 모를 때는 건물을 기억하는 게 제일 좋다. 은행, 가게 등 위급한 상황에서 내 위치를 설명할 수 있을만한 건물을 외워둔다.

- 주변 사람에게 일정시간 이후에 내가 연락이 없으면 나를 찾아달라고 당부한다 : ‘00시 이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나에게 꼭 전화를 해라’, ‘전화를 수신거절하지 않고 안 받으면 나를 찾으러 와라’ 라고 미리 당부해둔다.
-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둔다 :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핸드폰을 둔다.
- 손님보다 먼저 샤워하지 않는다.

A, B, C가 보여준 각각의 경험에 기반한 개별적 안전지침은, 여성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잦은 위험상황에 노출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점을 일부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력 피해와 성매매라는 ‘불법’의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여성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 폭력 피해와 ‘불법’ 성매매 사이에서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성의 위험상황에 대한 보호 요청을 무시하거나 성매매 여성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도 매우 문제적이다. 사건이 벌어진 후 여성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폭력가해자들이 폭력을 가해도 자신을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보다 쉽게 성매매 여성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 [이룸]에 진행한 몇 가지 법률지원 사례만 살펴봐도 그렇다. 3-4년 전, 성매매집결지에서 일하던 한 여성은 성구매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상담소에 법률지원을 의뢰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력피해를 당했는데도 가해자에게 경미한 처벌만 내려진 사실에 분노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해서 승소했지만, 청구금액을 받아낼 강제력을 지니지는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은 피해 여성의 정신적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았다.

또 상담소에 법률지원을 요청한 또 한 명의 여성은 티켓다방 여성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폭행을 당했다.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신고한 여성은 성매매방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사례 A도 폭행피해를 신고했다가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을 피의자로 보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의 피해사실은 소외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피해여성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은 수사단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선과 처분은 여성이 폭력피해나 어떤 위험 상황에 처해도 법에 호소할 수 없는 조건만 형성한다.

폭력피해와 ‘불법’ 성매매 행위자 사이에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현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져준다. 성매매 여성에 대해 ‘불법’ 또는 ‘낙인’이라는 표식을 없애는 것, 성매매 여성의 “비난받지 않으면서 보호받을 권리”, 또 성매매와 상관없이 그저 폭력 피해자로서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 해외사례 : 호주, 성노동자를 위한 안전지침⁵⁾

성매매 여성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호주 성노동자⁶⁾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표로 삼고 있으며, 성노동자들의 성폭력 위험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이다. 전자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는 호주에서 성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RhED(Resourcing health & Education in the Sex Industry)에 게재된 ‘출장성매매 여성을 위한 안전수칙(Safety Tips for Escort Workers)’ 과 ‘호주

5) David Edle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the Australian Sex Industry」, RhED.

RhED, 'Safety Tips for Escort Workers'. (출처: <http://sexworker.org.au>)

6) 본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장에서 참고하고 있는 자료에서 사용하는 ‘sex worker’ 즉 ‘성노동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옮겼다. 호주에서는 부분적으로 성매매가 합법화 되어 있고, 성노동자(sex worker)로서의 권리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산업에서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the Australian Sex Industry)'에 대한 보고서이며, 후자는 성폭력을 연구하는 호주 센터(Australian Center for the Study of Sexual Assault, 이하 ACSSA에서 발표한 '호주에서의 성노동자와 성폭력 피해(Sex worker and sexual assault in Australia)'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례에서 성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매매가 관리와 단속 대상이어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14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성매매 여성들이 성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예측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안전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호주는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다르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현실과 사회적 지위, 특히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작동되는 양상은 매우 닮아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에서 위험경험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전할 권리' 는 그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기 때문이다.

1) 위협의 요소⁷⁾

통상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있어 낯선 이들보다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길거리 성매매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한된 연구(퍼킨스 보고서, 1999)이지만, 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구매자를 포함한 낯선 이들이 가해자가 되기보다는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비중이 더 높았다. 퍼킨스(Perkins, 1991)는 성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알게 된 남성들에 의해 매우 자주 공격받고 있으며, 남성들은 그들이 어느 때라도 성노동자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제기한다. 성구매자가 주요 가해자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성구매자로 만났던 사람이 여성의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한다는 점, 또 꼭 성구매자가 아니라 범죄의 타깃으로 성매매 여성을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구매자들, 핼프들, 파트너 뿐만 아니라 택시운전사와 심지어 경찰도 포함된다(O'Neill, 2001). ACSSA(2008)의 '호주에서의

7) DR ANTONIA QUADARA(2008), 'Sex worker and sexual assault in Australia-Prevalence, risk and safety', ACSSA.

성노동자와 성폭력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폭력의 기회를 조장하고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몇가지 요소들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는 성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족도 다른 지원서비스도 없다는 인식이다. 이는 폭력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숨겨주는 기능을 하며, 성구매자들이 계획되지 않은 폭력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잡힐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성구매자들은 성노동자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하지 않았던 서비스를 하게 하거나, 성노동자가 당연한 일처럼 하지 않는 것들, 그들이 기대할만큼 거친 것 등등에 대한 비용이 성구매자들에 의해 책정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폭력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즉 성매매 협상에서의 주도권이 성구매자들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셋째, 성매매 여성을 ‘제거할 대상’으로 보고 ‘관리의 담론’으로 서술되어 온 공동체적 인식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폭력에 대한 위험요소를 노동환경에서 찾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가장 위험한 성매매 형태를 거리성매매로 보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실내에서 일하는 것보다 실외에서 일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실내에서 일하는 것은, 불이 켜져 있고, 안전한 문이 있으며, 내부통화장치나 감시장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인데, 이는 성노동자들이 성구매자와의 상호작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또 호객행위만을 전담하는 이들이나 접수원은, 술이나 약에 취해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성구매자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1 거리성매매 보다는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실외에서 일하는 것, 즉 1:1 거리성매매에는 이런 종류의 통제가 없다. 예를 들면, 거리성매매에서 성구매자의 차에서 서비스한다는 것은 “그 손님에게 거의 모든 통제권을 주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차 안은 위험의 상징적 장소라는 것이다. 즉 성노동자와 성구매자 1:1만의 공간이 아니라 타인들의 존재 또는 일하는 환경에 대한 통제가 성폭력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 현실에 대비시켜 보면, 성매매 업소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이들이 과연 성매매 여성들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해 술에 취한 성구매자를 손님으로 받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성구매자는 늘 술에 취해 있다. 또 성매매 여성을 제외한 업소 직원들이 과연 여성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며,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홀로 모텔로 나가는 경우들을 감안할 때 일하는 환경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외에도 성폭력, 폭력에 있어서 협상력의 부재, 즉 어린 성매매 여성⁸⁾, 약물에 취해 있는 여성일수록 성구매자와의 대면에서 주도권 및 통제권을 잃게 된다는 점도 폭력에 노출되는 위험요소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성매매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성매매의 장소와 등록여부를 둘러싼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에서 성노동을 규제하려는 법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이 성폭력범죄를 신고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있고, 이 점은 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2) 개인안전수칙과 업주의 책임⁹⁾

호주 성노동자 단체 RhED에서 마련한 출장성노동자를 위한 안전수칙(Safety Tips for Escort Workers)에 따르면, 출장 성노동자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친숙하지 않은 장소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안전수칙¹⁰⁾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출장 성노동자를 위한 개인 안전수칙’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telephone)가 없거나 예약하기 위해 휴대폰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은 방문하지 말고, 일하러 갈 때 핸드폰을 꼭 가져갈 것, 예약할 때부터 친구들이나 성노동자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는 것을 주문한다. 이것은 고객이 누군가 당신이 어디에 있고 당신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일하기 위해 성구매자의 집에 갔을 때는, 그 집 주위를 먼저 둘러보고 이상한 게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하면서 몇 대의 차가 있거나 집에서 나오는 큰 음악소리를 들었거나 집 주위에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보았다거나 등등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성구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과감히 예약을 취소하라고 지적한다. 절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하러 갈 때 현금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말고, 성구매자와 미팅할 때 처음 10분 동안은 성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즉 성구매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마자 통제권

8) Underage sex work, 미성년자를 말한다.

9) David Edle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the Australian Sex Industry」, RhED.

RhED, 'Safety Tips for Escort Workers'. (출처: <http://sexworker.org.au>)

10) 안전수칙에 대한 전체 내용은 【부록】을 참고.

을 가지고 오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한다. 또 성구매자가 갑작스럽게 변했을 때조차 정중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이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성구매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분명하게 설명할 것을 주문한다. 이 모든 일에 항상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도록 한다. 또 성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아서 함께 온 운전사에게 돈을 맡겨두거나 안전한 장소에 돈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성노동자가 운전기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성구매자가 밖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노동자가 일하러 나간 공간에 대해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무심한척 하면서 꼼꼼히 살피길 촉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있는지, 위험한 사인은 없는지, 출구는 어디인지까지도. “이 집 너무 예쁘네요. 좀 구경해도 되요?” 라고 말하거나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재빠르게 집안을 살필 것을 촉구한다. 이 외에도 술을 마시지 말고, “싫다” 고 말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 즉 불쾌하고 무례하게 구는 성구매자를 만났다면, 그에게 서비스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거칠게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경고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한다. 심지어 성노동자 혼자 운전을 하고 왔다면, 성구매자 집에서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고, 가능하면 라디오 볼륨을 틀어 놓아서 성구매자로 하여금 성노동자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썩, 거친 호루라기 소리, 스프레이 같은 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여성이 도망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칼과 총은 성노동자에게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소지하지 말라고 한다. 또 일하러 간 장소에서, 위험상황에서 빨리 도망칠 때 소지품을 잡기 위해, 되도록 문 근처에 소지품을 놔두라는 수칙까지 있다. 마지막으로 성구매자에게 알코올과 마약은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성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지켜야 할 수칙으로는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며, 또 그것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상하다고 느끼거나 위험상황에 빠졌을 때,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그 장소를 벗어날 것, 또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상황이 닥친다면, 성구매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신원을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알리고, 창문을 깨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물건을 던져 자신을 방어하기를 권한다. 이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이기도 하며, 성구매자를 놀라게 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한다.

‘출장성노동자를 위한 안전수칙’에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개소 (Eecort Agency)에서 알아야 할 것들과 출장성노동자의 이동을 돕는 운전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수칙을 만들어놓았다. 성노동자가 움직일 때 소개소는 이들의 행선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위험상황에서 개입할 방법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이 수칙에 따르면, 운전사는 성구매자가 있는 장소까지 동행해야 하며, 룸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고,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성노동자를 데리러 가야 한다. 즉 운전사는 단지 이동을 위해 필요한 역할 뿐 아니라, 성노동자가 필요로 할 때 언제나 그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수칙을 제안하고 있다.

‘호주 성산업에서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the Australian Sex Industry)’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업주들은 원인과 상관없이 업소 내에서의 위협, 폭력, 학대 등의 가능성을 제거할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업주들은 성노동자들이 처할 수 있는 폭력이나 학대의 상황이나 업무를 파악해두어야 하고, 성노동자들에게 의사소통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성노동자들과 함께 개발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해 놓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성노동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성노동자들이 위험한 순간을 잘 구분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 모든 방마다 알람버튼과 같은 안전기구를 설치하고, 장부적기, 전화받기, 성구매자 응대에 대한 훈련과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또 말이나 신체적으로 성노동자를 위협하거나 학대한 진상 성구매자를 쫓아내고, 다시는 업소에 들여놓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성노동자에게도 그런 진상 성구매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성노동자가 지역단체의 조언을 받아 경찰이나 업주에게 폭력적인 상황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폭력을 경험했다면, 의료, 법률적인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에도 업주는 성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옷,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위험한 상황에서 성노동자가 따라야 할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하게 성구매자로부터 탈출하는 방법, 위험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과 도구, 접수대에서 벌어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 성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업소의 다른 직원들의 역할, 경찰을

꼭 불러야 할 상황에 대한 조언, 진상 성구매자가 다시 업소에 나타나거나 예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업주가 해야 할 일, 지역 성노동자 단체에서 진상에 대한 책자에 실을 수 있도록 진상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일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안전수칙은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마련된 것이다. 위의 안전수칙은 역설적으로 성매매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기도 하다. 어떤 직업에서도 ‘도망갈 준비’를 늘 염두에 두거나, 자신을 방어할 무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험을 예상하고 방어해야 하는지, 또 성매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안전수칙의 목적은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잠재적으로 학대적인 상황들과 폭력이나 협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ACSSA, 2008).

이 안전수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회에서도, 이러한 실천 가이드라인이 잘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성매매는 법률로 통제하거나 범죄시되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질병간염에만 과도한 포커스를 두고 있어 이러한 안전수칙을 쇠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Banach & Metzenrath, 2000).

3) 진상 프로그램(Ugly Mugs)¹¹⁾

‘진상 프로그램(Ugly Mugs)’은 SWOP와 RhED와 같은 성노동자 단체에서 만든 것으로, 성매매 업주와 성구매자들 사이의 폭력적인 행동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폭력적인 성구매자, 또는 그를 ‘사기꾼(doggy)’이라고 호명하며, 성구매자에 대한 개인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즉 그 지역에서 경계해야 할 성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성매매 여성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커뮤니티에서 폭력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사람이 폭력적이고, 학대적인지 또는 성폭력을 가했는지 등 성구매자의 세부적인 사항을 묘사할 수 있으며, 차등록번호, 진상 성구매자의 생김새, 차에 대한 묘사까지 가능하다. 이 정보는 성노동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심지어 “현재의 진상왕”도 뽑는다고 한다.

11) DR ANTONIA QUADARA(2008), 'Sex worker and sexual assault in Australia-Prevalence, risk and safety', ACSSA.

Sanders(2004)는 강간, 절도, 폭력가해를 퍼뜨리고 수집하는 이런 시스템이 여성들 사이에서 폭력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폭력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고 말한다.

살인사건이 아닌 이상, 유흥업소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 범죄 사건은 ‘쉬쉬 하면서’ 넘어가기 마련이다. 시끄러워질수록 업소의 업주나 여성들에게 불리할 뿐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설상 신고했다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방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자로 취급함으로써 피해자로서 보호요청을 무색하게 한다. 그런 현실에서 진상 성구매자를 견제할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는 시도된 바는 없지만, 진상 프로그램은 성매매 여성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율적인 견제시스템으로서 법과 사회가 보호해주지 않는 영역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흥미로운 프로젝트인 것 같다. 커뮤니티의 정보와 지식공유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있어, 협상과 거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힘을 키워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

성매매 여성은 사회의 거의 모든 관행에서 차별을 받는다. 또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범죄 피해에 있어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피해자와 그렇지 않은 피해자로 나누고, 이들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된다(ACSSA, 2008).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 피해에 노출되었을 때, 이들을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라는 잠재적 불법행위자로 판단하게 되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기 일쑤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전략은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적 수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피해를 입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있어 어떤 관점으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함의를 던져준다.

호주 성노동자 단체 RhED에서 정리한 ‘호주 성산업에서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몇몇 지역이나 주의 경찰들은, 성매매 관련 법이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성매매 여성을 보조하는 경찰을 지정해주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여성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 성노동자 단체가 경찰과의 연락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에서의 성노동자와 성폭력 피해’ 보고서에 의하면, 성폭력을 당한 성노동자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법적, 의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성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노동자 관련 단체의 보조를 받는 것을 포함해서 성노동자들이 익명으로 또는 가명을 사용해도 되는 의료케어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성폭력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또 지원서비스 담당자들이 성노동자들 삶과 관련된 불안정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기한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방전략과 지원서비스는 지역네트워크에 의존하면서, 성노동 커뮤니티와 함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5) 호주 사례의 시사점

호주 사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성매매 여성의 안전에 대한 호주의 사례는, 법률적 환경은 다르지만, 성매매 여성이 처한 비슷한 사회적 조건들에 주목하게 한다.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고, 호주에서는 부분적으로 합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성산업 구조에서 성매매 여성이 협상력이나 주도권을 갖기 어렵다는 점,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사법,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 등에서 계속 작동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폭력 가해자들 자신이 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 성매매가 불법이어서 또는 경찰의 주목을 받고 싶지 않아서 등등의 이유로 성매매 여성 자신이 당한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은 닮아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의 폭력피해를 예방할 전략이 당사자의 경험 연구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함의를 던져주고 있는데, 성매매 여성이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험경험과 마주하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사회적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에 대한 위협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 그리고 폭력피해를 예방할 환경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논의가 그것이다.

둘째, 호주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업주 뿐 아니라 소개소, 운전자 등의 주체들에게도 성매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성매매 여성이 일하는 과정에서 위협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메시지를 유통시키고 있다. 물론 성매매 여성을 수익의 도구로 인식하는 환경에

서 이러한 주변인들의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 메시지인지는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안전하기 위해 일하는 환경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목으로 읽혀진다. 성매매 여성이 벌어들인 수익에 기생하는 이들이 여성의 위험상황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호주의 안전수칙은 성매매가 합법인 사회에서도 성매매가 본질적인 위협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전수칙 대부분의 항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구매자의 폭력에 방어하고 대비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직업이 내포한 폭력성과 위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폭력에 대비하는 성매매 여성들만의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된 “진상 프로그램”은 위협에 대처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정보와 지식을 통해 구성되고 또 실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성매매 여성의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서비스에 있어서 그들의 “의명성”을 담보하면서, 성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대목이다.

Ⅲ. 대안적 논의

사실 성매매가 불법인 현실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을 보호할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호주에서조차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률¹²⁾이 존재하는데, 호주 성노동자 단체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불법화 또는 성매매에 대한 어떤 규제조차도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그들 자신이 범죄자가 되거나, 혹은 불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규제를 받게 되거나 단속대상이 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ACSSA, 2008).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성매매에 대한 불법, 합법의 프레임보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더 강력하게 작동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호주 퀸즐랜드 성산업에 대한 보고서(Boyle, F., 1997)에서는 성구매자로부터의 강간, 또는 파트

12) 호주의 몇몇 지역에서는 성노동에 대한 합법화 의견을 구성해왔다. 이는 자격을 갖추고, 제한적인 법률의 조건을 따를 때 합법적 성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호주의 많은 법률은 성노동자들이 고립된 공간에서 일하거나 홀로 일할 것을 권장한다(DR ANTONIA QUADARA, 2008).

너에 의한 강간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했는데, 경찰이 그들을 성매매 관련 범죄자로 취급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이유보다 경찰에 주목받기 원하지 않으며, 경찰이 어차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더 많았다. 이러한 응답은 합법적 성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는 호주와 한국은 성매매에 대한 합법, 불법 등과 같은 법률적 환경은 다르지만 성매매 여성이 느끼는 차별적 시선, 소외감은 매우 닮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의 위험경험을 줄이고 안전을 모색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도 법이나 정책적 개선에 기대하기 보다는 성매매 여성들 각 개인들의 전략과 지역 또는 성매매 여성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전략 차원에서 얘기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호주의 성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지침을 소개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그런 측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축적된 경험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상력이 동원되어야 성매매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안적 논의는 상상력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대안적 논의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성매매가 불법이고, 익명적 공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성매매 현실의 특성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성매매 여성들간에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호주처럼 성노동자 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반성매매 활동 단체, 성노동자 단체가 성매매 여성들간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유통되는 정보가 자활과 탈성매매를 위한 법률적 지원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 앞서 소개된 호주의 안전지침, 진상 프로그램처럼 여성들의 성매매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주목하고, 이런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여성들의 내적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험에 이름을 붙이고 언어화하며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다.

성매매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에서 피해/생존자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도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 성폭력, 절도 등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이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강제하고,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 편에서 이들을 조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여성의 탈성매매 계획과는 상관없

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 과정은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범죄사건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성매매라는 여성의 일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암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업소에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흥업소에서 여성들을 고용할 때, 고용계약조건으로 ‘유흥접객원이 당하는 사고, 사건들에 대한 고용인의 책임 규정과 배상’ 같은 것을 명시하라는 요구도 가능할 것 같다. 여성들은 일하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보상 같은 것을 받기 어렵고, 업주들 또한 자신들이 고용한 여성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러한 규정이라도 채택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이 폭력이나 성폭력, 절도 등 범죄피해를 신고했을 때,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실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논의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생각하기 매우 어렵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2장 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26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성매매)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나마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경찰과 검찰에 탈성매매나 자활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이런 법률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매매 여성이 ‘폭력피해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성구매자와 똑같이 성매매로 벌금처분을 받았다’ 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는 검·경찰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거나 유보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나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적 지원은, 위의 두 가지 법조문에 의지해 범죄 피해자로서 여성을 보호하고 그 사건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것과 피해자인 여성의 ‘성매매방지법 위반’ 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 법률적 환경에서 성매매 여성이 검, 경찰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 예외적인 규정이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 경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이나 성폭력을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성매매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을 때,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 관련 상담소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 관련 상담소, 성노동자 단체와의 관계가 더 긴밀해져야 한다.

폭력적인 성구매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살인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되어서야 수사에 나서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는데, 성구매자가 여성을 위협하거나 협박, 또는 폭력을 가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며...

본 보고서는, 성매매를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 로만 받아들이는 사회적 환경에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 개인의 권리와 안전이 통째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폭력과 성폭력, 절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성매매’ 라는 범죄의 한 부분으로만 취급하는 사회적 시선의 부당함도 함께 제기하고자 한 것이다. 호주 성노동자들의 안전 가이드라인은, 매일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성매매 여성들의 지식과 실천이 드러나는 중요한 표본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늘 방어하는 태도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고 심지어 거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를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성매매 자체에 내재된 폭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의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를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상징적 낙인을 제거하는 것, 또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하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장기적 프로젝트의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자영(2011), ‘성매매 피해여성의 정신건강과 자살’ , 『여성과 인권』 2011년 하반기(통권 제 6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전준희(2011), ‘서울에서 119 구급차가 가장 많이 출동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 별별신문 3호, 발행: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주진우(2012), 『주기자: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 푸른숲
- 서울대학교(2010), 『2010 성매매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 Benach, L. & Metzenrath, S.(2000). *Principles for model sex industry legislation*. Darlinghurst, NSW: Scalet Alliance and Australian Federation of AIDS Organisations.
- Boyl,F., Glennon,S., Najman,J., Turrell,G., Western,J., & Wood,C.(1997). The sex industry:Asurvey of sex workers in Queensland, Australia. Aldershot:Ashgate.
- David Edle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 the Australian Sex Industry」 , RhED.
- DR ANTONIA QUADARA(2008), ‘Sex worker and sexual assault in Australia—Prevalence, risk and safety’ , ACSSA.
- RhED, ‘Safety Tips for Escort Workers’ . (출처: <http://sexworker.org.au>)
- Sanders, T.(2004), A contiuum of risk? The management of health, physical and emotional risks by female sex wokers, *Sociology of health 7 Illness*, 26(5), 557-574.
- Thomas Joiner(2011), 『Myths about Suicide』 , Havard University Press:Reprint edition(November 30, 2011).

【보도자료】

- 내일신문, [NGO칼럼] “성매매 여성들의 희생, 방치 안된다” , 정미례, 2010.8.17,
- 경남신문, “노래방 도우미 살해혐의 30대 징역 13년 선고” , 2012.2.10
- 경남도민일보, “창원 노래방 도우미 살해혐의 30대 영장” , 2011.11.7
- 경남도민일보, “강력범죄 일하는 여성 노린다” , 2010.1.29
- 부산일보, “만남 거절한 노래방도우미 살해 20대 검거” , 2011.5.17
- 매일경제, “ ‘봉사료 시비’ 50대 노래방 도우미 살해” , 2010.5.7

MBC, “도우미 살해, 암매장 용의자 붙잡혀” , 2009.7.12
MBC, “환각상태서 女안마사 집단 성폭행” , 2008.1.30
뉴시스, “출장안마사 유인해 강도짓한 40대 입건” , 2011.9.2
광주 뉴시스, “다방여종업원 ‘범죄사각’ ... 성폭행, 강도 잇따라” ,
2008.4.28
김제 뉴시스, “다방여종업원 성폭행한 40대 男 ‘덜미’ ” , 2012.3.15
통영 뉴시스, “통영서 다방여종업원 상대 범죄 기승” , 2011.2.14
문화일보 사회, “다방女에 ‘히로뽕 탄 맥주’ 몰래 먹이고…” , 2010.10.8
문화일보 사회, “다방女 불러 옷 벗기고 현금 뺏어” , 2010.4.26
연합뉴스, “부산경찰, 다방여종업원 성폭행 업주영장” , 2010.4.7
천안 뉴시스, “천안동남경찰,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 20대 검거” , 2010.3.11
경북일보, “다방종업원 금품갈취 ‘덜미’ ” , 2010.2.1
목포 연합뉴스, “다방여종업원 살해 30대 용의자 검거” , 2010.1.13
공주 뉴시스, “다방여종업원 강도살인 등 두달간 18회 흉악범죄 50대 검거” ,
2009.2.15
경향닷컴, “동물마취제 먹인 뒤 성폭행, 금품갈취 20대 男 체포” , 2009.2.12
서울경제, “ ‘판사 때문에 억울’ 성폭력 피해여성 자살” , 2011.6.10

【부록】 출장 성노동자를 위한 안전수칙(Safety Tips for Escort Workers)

출장 성노동자를 위한 안전수칙 (Safety Tips for Escort Workers)

RhED

모든 출장 성노동자를 위한 개인 안전수칙

- 1)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telephone)가 없거나 예약하기 위해 휴대폰전화를 사용하는 성구매자는 방문하지 말 것
- 2) 일하러 갈 때 핸드폰을 꼭 가져갈 것. 예약할 때부터 누군가에게 전화해라.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이든 당신 집의 자동응답전화기든) 이것은 성구매자로 하여금 누군가 당신이 어디에 있고 당신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 당신이 집에 가서 성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먼저 그 집 주위를 차로 둘러보라. 그리고 뭔가 이상한 게 없는지를 체크하라. 예를 들면 드라이브하면서 몇 대의 차가 있거나 집에서 나오는 큰 음악소리를 들었거나 집 주위에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보았다거나... 당신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전화로 성구매자에게 당신이 걱정하는 부분을 말하고 예약을 취소해라.
- 4) 일하러 갈 때 현금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가지 마라.
- 5) 성구매자를 미팅할 때 처음 10분 동안은 당신의 권리를 행사해라. 성구매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마자 통제권을 가지고 오고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 성구매자가 갑작스럽게 변했을 때조차 정중하고 친근하게 대해라. 그것이 종종 통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 6) 분명하게 성구매자에게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하라. 서비스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 가격은 얼마인지.
- 7) 성구매자에게 당신이 어떤 서비스에서도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설명해라
- 8)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돈을 먼저 지불할 것을 요청해라. 성구매자가 지불할 때 당신의 운전사에게 돈을 주거나 안전한 장소에 돈을 뒀다. 예를 들면, 안주머니나 다른 안전한 공간에. 당신의 돈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라.

- 9) 당신이 기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구매자에게 밖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 10) 일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게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금과 입금표를 확인하라. 당신의 현금을 성구매자 앞에서 세지 말아라. 수표는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11) 집안의 모든 것을 무심한척하면서 꼼꼼히 살펴라. 다른 사람이 있는지, 위험한 사인은 없는지, 출구는 어디인지. “이 집 너무 예쁘네요. 좀 구경해도 되요?” 라고 말하거나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재빠르게 집안을 살펴라. 항상 조심해라.
- 12) 술을 마시지 마라.
- 13) ‘싫다’ 고 말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불쾌하고 무례하게 구는 성구매자를 만났다면 그에게 서비스할 가치가 없다. 그가 거칠게 나오면 그 자리를 떠나겠다는 경고를 하라.
- 14) 약삭빠르게 행동해라. 특히 상황이 점점 불쾌해진다면, 침착하고 솔직함을 유지해라. 빨리 성구매자의 연성을 사지 말라. 이 상황을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15) 당신이 혼자 운전을 하고 왔다면, 집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해라. 예를 들면 나무 뒤나 숲속 같은 곳, 그리고 가능하면 라디오 볼륨을 틀어 놔라. 이것은 성구매자에게 밖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 16) 펜, 거친 호루라기 소리, 스프레이 같은 것은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당신이 도망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준다.
- 17) 칼과 총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것들은 너에게 사용될 수도 있다.
- 18) 문 근처에 너의 소지품을 놔둬라. 네가 빨리 도망칠 때 필요하다면 그것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 19) 성구매자를 방문할 때 알코올과 마약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라.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 1) 위협에 빠지거나 STD(성행위 감염증)를 감지할 때 너의 본능을 믿어라.
- 2)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나가라. “내가 일할 때 쓰는 가방을 놓고 왔다. 차에서 가져와야 한다” 라고 말하거나 “운전사에게 당신 집에 있고 괜찮다고

알려야 한다” 라고 말하고 나서 거기를 떠나라.

- 3) 성구매자가 공격적이거나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에게 신용카드나 주소, 차를 추적해서 당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라.
- 4) 위협에 빠졌다면 손님's 창문을 깨거나 등이나 재떨이 또는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소리를 깨는데 주저하지 마라. 이것은 깜짝 놀라게 할 것이고 당신의 운전사가 네가 위협에 빠져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5) 판타지(Fantasy)한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해라. 무엇을 할 거라고 알리고 손님에게 콘돔을 사용할 거라고 알려라.
- 6) STI-성병예방을 위해 성구매자를 체크해라. 특히 사면발이, 염증, 포진, 물집 등. 콘돔이 100퍼센트 이런 병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 7) 윤활유로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지 말라. 마사지 오일은 콘돔 고무를 마모시킨다. wet stuff 나 KY 젤리 같은 수성(water based) 윤활류를 사용하고 콘돔을 사용하기 전에 마사지 오일을 지워라.
- 8) 당신이 사용하는 콘돔을 써라, 손님이 사용하는 것 말고.
- 9) Nonoxynol 9 콘돔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Nonoxynol 9는 손톱 매니큐어를 지울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 10) 콘돔을 입으로 씹는 것은 손님이 콘돔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유용하다. 이것은 흥분시킬 수 있다.
- 11) xylocaine을 사용한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강렬한 섹스를 위해서 xylocaine을 사용하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 아니다. 마비시키는 영향 때문에 당신은 어떠한 상처에도 덜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콘돔이 찢어졌다고 느낄게 된다. Xylocaine은 성기를 마비시킬 수 있다.
- 12) 성구매자가 콘돔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하지 않을 때 가슴섹스(Spanish sex)나 윤활유를 이용한 손으로 하는 섹스 등 같은 다른 섹스를 제안할 수 있다.

〈Eecort Agency(소개소)에서 알아야 할 것〉

- 1) 당신의 agency (소개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할 수 없는 서비스를 알려라.
- 2) 당신의 소개소가 부도수표 (bounced cheque)와 신용카드 사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봐라.
- 3) 당신이 일하러 움직이거나 예약을 연장할 때 항상 소개소에 전화를 해라. 당신은 어려움에 처할 때 사용할 당신과 접수원(receptioninst)의 코드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운전사를 이용할 때 알아야 할 것

- 1) 당신이 성구매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야한다면 운전사를 고용할 것을 고려하라. 운전사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그들은 안전을 대비하고 편리,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 2) 운전사에게 성구매자의 문 앞까지 당신을 동행해달라고 요청해라. 이것은 성구매자가 완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당신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할 수 있다.
- 3) 예약이 호텔이나 모텔에서 이루어진다면 운전사에게 룸번호를 알게 하고 서비스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알려라.
- 4) 당신의 운전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에 기다릴 것을 확실하게 말해라.
- 5) 당신이 알고 믿는 운전사를 이용해라.
- 6) 운전사가 예약이 끝날 때 손님 방에 노크를 하도록 해라.

운전사가 알아야 할 것

- 1) 당신이 일을 잘 수행할 때 Escort worker한테 돈을 받는다. 당신이 옮겨주는 일 뿐 아니라 안전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성노동자를 일하는 장소에 내려주고 떠나지 마라. 성노동자가 서비스를 다 제공할 때까지 기다려라.
- 3) 성노동자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그를 도울 준비를 해라.
- 4) 성노동자를 괴롭히거나 그에게 무료 서비스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 5) 성노동자를 존중하고, 일을 할 때 그가 바라는 대로 해줘라.
- 6) 일이 언제 끝나는지를 그 시간을 알아라. 노동자가 동의된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 7) 당신이 급하게 떠나야 할 경우가 생기니까, 핸들을 잠그지 마라. (차가 바로 출발할 수 있게 준비해 놔라.)
- 8) 당신은 난폭한 성구매자에 대항하여 당신 자신과 성노동자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
- 9) 그/그녀가 위협에 처해있을 때 사용하는 신호를 당신과 성노동자 사이에 어떤 코드를 정해 놓아라, 예를 들면 침실커튼을 움직인다든지...

【토론 1】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토론문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토론문

김주희(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최근의 끔찍한 범죄 이야기도 사실 그렇고.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대상 범죄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성 운동계, 학계, 나아가 정부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비교적 최근의 ‘밤길 되찾기 시위’ 나 ‘여성주의 자기방어 프로그램’ 과 같이, 폭력적인 문화에 내재한 성별 문제에 보다 분명히 초점을 맞추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사회의 의미체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어왔다. 이러한 운동의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는 것에는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어떠한가.

수많은 범죄 스토리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들이라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에 대해서, 손쉽게 상상 가능하다. 아마 세상에 알려진 이들의 피해 스토리는 극히 일부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가 불법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여성들의 피해 상황에 안타까움만 늘어놓을 수 있을 뿐, 이들의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할지는 본격적으로 사유되기 어려웠다. 발제문 “성매매 여성, 안전을 말할 수 있는가” 에는 이런 현실을 가까이에서 목도하며 느낀 글쓴이의 안타까움이 곳곳에 배어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터뷰이의 ‘자기만의 안전지침’ 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기선제압을 한다” 는 문구에서는 전율이 오기도 했다. 자기와 타인의 경험을 수집해서 자신만의 안전지침을 언어화한 이 여성들의 지혜와 용기에 감탄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의 안전지침은 결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는 식의 구호로 포장될 수 없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요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런 안전지침을 나름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처할 수 있을 위험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물

레이션을 돌렸을지, 또 실제로 경험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사회적 보호가 거부된 존재들이 나름의 방편으로 수립한 ‘자기만의 안전지침’은, 이런 측면에서 쟁점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여전히 성매매는 개인 남자와 개인 여자 간의 거래로 상상된다.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로 등장하는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을 보이지만, 이들이 예외적으로 ‘싸이코 패스’를 만나서 발생한 지독히 재수 없는 사건으로 간주할 뿐이다. 남자 손님들의 ‘깃кот음’은 마치 고무줄을 끊는 남자 아이들의 행동처럼 여겨지며 ‘관심’의 척도, ‘편하게 여기는’ 척도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진상’ 손님과 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의 ‘진상’ 깃은 이런 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사전 정보로서 유통되어야 한다.

법은 어떠한가.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한(최소한 구금되어 갱생되어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보다 선진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여겨지는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는가. 표정선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폭력 가해자 남성들은 오히려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다. 업주나 삼촌은 돈벌이에 급급해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소극적이다. 때로 이들은 일상적 폭력 사건의 가해자이기도 하다. 가해자를 신고한다 해도 이미 탈법적 공간인 ‘동네 경찰서’로부터 가해자 처벌이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성매매 방지법에 의거해 이들은 피의자 취급을 당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안전망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국가는 가족을 통해 인구를 통치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구는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안전을 수립하는 일은 이러한 노동력을 보호하고 자하는 통치 수단이다. 이 때 여성들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여성들은 노동력의 재생산 담당자로 위치 지어지는데 이때 여성들은 가족 내 존재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족이라는 단위에 종속되었다고 간주된 여성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일은 너무나 손쉽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은 어떠한가. 이들은 대표적인 가족 외부에 있다고 간주된다. 우리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역시 가족에 속해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노동이 자본주의의 재생산 노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인권에 대해 고민하자고 주장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에 따라 운동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 같다.

(역사적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야기하자면) 역설적이게도 성매매 여성이 가족 외부에 놓였다고 공표된 것은 이들이 법에 기입되면서이다.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의 고리를 잘라내고 이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상징적인 법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망을 고려하는 작업은 오히려 이 법의 지향과 충돌한다고 간주된다. 이들의 정체성이 법에 기입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시민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매매 방지법은 그들을 당연히 변환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한다. 성매매 여성이라면 누구나 성매매를 벗어나길 바란다고 읽어낸다.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이 ‘본질적으로’ 법 앞의 동등한 주체라고 인정하고자 했으나 성매매 여성으로서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다. 탈성매매, 자립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법에 기입되지 않은 주체’가 되어야 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여성/시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발제자는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성매매 여성의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묻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글쓴이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발제문에서는 호주 사례를 예로 들어 안전 확보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을 것인지 그 방향과 성격을 모색하자고 요청한다. 글쓴이도 지적하듯이 우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성매매 여성들 간에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호주의 “진상 프로그램”은 새롭고 유익해 보인다. 물론 이 글의 세명의 인터뷰이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들은 이미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통하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집적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활동에 날개를 달아줄 중요한 동지일 것이다. 이런 작업에는 다양한 이름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이 집적한 노하우, 이들이 살아온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기도 할 것이고, 이들이 삶을 지속하고 있는 장소성을 기록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하는지 이후의 향방이 궁금해진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논리와 결합할지, 누구와 어떻게 연대할지에 따라 운동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여성 혹은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구조의 문제를 비켜가지 않으면서 현실을 풀기

조사결과를 읽고 암담했다. 예상했던 만큼 성매매여성(성노동자)¹³⁾의 노동현실, 건강의 현실, 삶의 조건은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지 답답했다. 아마도 하나의 해법으로 완전히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성노동자 인권에서 성매매에 대한 가치판단¹⁴⁾과 별개로 성매매 또는 성노동자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현재의 성매매, 또는 성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녀’들의 노동환경이 안전할 수 있을가에 대해 고민했다. 그래서 곳곳에서 나오는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그녀들이 좀 더 안전한 노동환경에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은 부분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법인지 사실 확인할 수 없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성매매 또는 성노동은 아주 오래된 문제- 젠더 불균등, 젠더위계화, 성의 이중기준과 섹슈얼리티의 위계-가 얽혀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인 지금의 산업구조와도 얽혀있기 때문이다. 성산업이 어떻게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착취를 강화하여 삶을 악화시킬 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그저 합법화¹⁵⁾만을 대안으로 말하기 어렵다. 반대로 근본적인 대안으로

13) 성매매나 성노동이나 하는 명명은 이 글에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러하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거나 병기하도록 하겠다. 다만 성노동이라고 명명하더라도 노동패러다임으로 이를 보려는 것은 아니다.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에 대해서는 필자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고, 성매매라는 표현이 가지는 남성권력을 은폐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했다.

14)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 구조화된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성매매가 지속되어야 할 노동으로 (산업으로) 볼 것인가, 다른 삶의 기회, 다른 노동의 기회로 이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극은 크다.

15)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화로 크게 세 방향이 있어왔다. 금지주

‘성매매가 없는 세상’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은 무력하다. 가부장질서에서, 성매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아는 만큼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에 그저 근본적인 처방만을 말해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현재의 그녀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대안을 말할 수는 없다.

비슷한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다. 2007년 환경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에너지발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 폐기하는 입장을 표명한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 발전소 노동자들이 환경단체의 그러한 입장을 접했을 때, 발전소 노동자들의 심정은 처음에는 자신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나라는 황당한 심정이었다고 했다. 그 후 환경단체와 발전노조가 장기적인 전망과 현재의 역할에 대한 논의구조를 가지고, 지금 일하는 노동자들이 친환경에너지발전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불편한 심정은 누그러졌다고 했다. 현재의 자본주의 구조에서, 가부장 질서에서 평등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없애나가는 일들을 기획하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 때 근본적인 입장만을 발표하는 것은 때로는 뜬 구름을 잡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당사자들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 고려하고 존중하면서도 구조의 문제를 놓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계기였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 이윤을 얻는 에너지자본의 이해, 그들의 강한 저항,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 생산 등에 밀리지 않으면서 갈 방안을 세우는 것들과 동시에 논의과정에서 그 산업구조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의 삶과 그들의 고민을 나누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다.

성매매는 성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그리고 세계화와 이주로 성산업은 경제선진국인 서양과 빈국인 제3세계간의 구매-판매구조로 양분되고 있다. 존 바이드먼¹⁶⁾은 성산업에 주목하고 현대에는 노예제가 성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거기에 속한 여성들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성산업의 세계화는 제3세계 여성의 성매매증가와 연관된다. 카멜라 켄 파두는 제3세계 여성들의 성매매 증가는 빈곤 외에도 인종, 민족이 성산업의 복잡성을 보여준다고 하며, “제 3세계 여성의 이국풍화는 성노동에서 여성들을 자리매김하는데서 경제적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¹⁷⁾

의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판매자·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정책이고, 비범죄주의는 노르웨이처럼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하여 규제하거나 금지하지는 않으나 여성매매나 강제 성매매·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나 실질적 지배력 행사, 미성년자 공급 등은 형사법적 처벌대상으로 하여 성매매여성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성매매의 비범죄화이며,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비범죄화는 한국에서 노르웨이모델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다.

16) 성산업의 노예제에 관한 국제적 조망,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달다]2012. 메이데이

그렇다면 성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하나의 산업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¹⁸⁾ 해당 산업에 속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현실적으로 푸는 것과 함께 말이다. 또한 지배적인 가부장적 자본주의사회에서 성산업을 축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필자는 성산업을 축소, 성산업을 줄여가야 한다는 지향을 분명히 하면서 성노동자의 인권을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친환경적 에너지 전략으로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것처럼,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젠더 비대칭과 섹슈얼리티 위계, 인종적 위계를 양산하는 성산업¹⁹⁾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면서 동시에 성노동자 인권에도 주목해야 한다.

제도적 한계를 넘으면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성매매 없는 세상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를 버리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위협에 처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삶에 얽혀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성산업을 견제할 힘

한국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만들어진 후 성매매는 공식적으로는 불법산업이다.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피해자규정은 성매매여성 또는 성노동자들을 부정하고 피해자화하여 무력화존재로 보게 되는 점이 있어 비판이 있었다. 피해자화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옹호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권의 측면에서

17) 카멜라 캄파두, 성노동자 권리의 세계화.[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달다]2012. 메이데이

18) 2008년 성매매방지법의 23조 양벌규정의 완화는 사실상 성산업을 양성을 용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드리에 따라 정권초부터 방향을 잡았던 것이 양벌 규정 완화와 맥을 같이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7조 양벌 규정도 2011년 똑같이 개정했다.

19) 성산업을 정당한 규정과 무관하게 여기서는 성매매, 성노동과 관련된 성산업을 한정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사실 성산업을 이성애적 성산업 뿐 아니라 트랜스젠더적 동성애적 성산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산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섹슈얼리티의 향유와도 연관되었으며, 유흥업, 포르노 등 다양한 성적 서비스와 관련 산업을 다 포괄하고 있다.

중요한 관점이다. 성매매여성이나 성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성산업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으며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성매매합법화는 성노동자들뿐 아니라 국가권력기관에서 주장되기도 한다.²⁰⁾ 또한 합법화를 하면 인신매매나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로 몇몇 나라에서 합법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실제 불법행위나 폭력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호주의 메리 루셀 설리반 박사에 의하면 조직범죄나 폭력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한다. 합법화이든, 비범죄화이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된 것이라. 우리의 목표는 성 착취 없는 여성의 노동과 인권보호이다.²¹⁾

“빅토리아 주의 경험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취급할 때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성매매의 합법화는 성매매의 해악을 억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합법화로 인한 해악을 양산한다. 성매매의 합법화가 여성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

주정부가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합법적 성산업과 비합법적 성산업 모두가 크게 성장했다. 특히 비합법적 성산업은 합법적 성산업보다 규모가 4.5배 규모가 크다 “

“ 합법적인 성매매업소나 데이트형 성매매업체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의 근로환경은 대체로 업주들의 지배적 지위와 성매매시장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 여성들은 강간이나 폭력 같은 노골적인 수단에 의해 계속해서 성매매를 강제당하기도 하고 업소 중니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또는 구매자가 원하면 어떤 성행위라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성매매를 강제당하기도 한다.” ²²⁾

이러한 경험은 합법화가 성매매여성 또는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시키는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업주와 여성, 구매자 사이의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없다. 그래서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와 퀸즐랜드 주정부 등을

20) 2008년 6월 법무부가 개최한 범형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성매매합법화 이야기가 나왔다. 8월에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공식석상에서 “ 성매매방지법은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에는 문제가 있는 법이다. 10명 중 7명이 지키지 않는 법을 만들고 단속하라는 것은 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여성신문 2008.9.26.)

21) 물론 이러한 목표조차 구조적 차원의 착취, 젠더불균등을 말하지 않고 성착취를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성매매여성의 자발성 여부만으로 착취 유무를 말할 수는 없다는 난점이 있다.

22)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가」. 메리 루셀 설리반 인터뷰. 희망공감 인터뷰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전수칙 책자를 제공(까다로운 고객 다루는 법, 술 취한 고객으로부터 도망치는 법)하며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안내해주는 것 이상을 하고 있지 못하다.

발표문에서도 말했듯이 호주와 한국은 법률적 환경은 다르지만 성산업 구조에서 성매매 여성이 협상력이나 주도권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사법,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

그럼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불법으로 정해진 일을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이 있다.²³⁾ 인권은 법에 한정되지 않는다. 성매매방지법만을 근거로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여성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쉬운 방법은 성노동의 합법화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독일의 합법화 조치는 1921년의 합법적 규제주의와 분명하게 구분된다. 기존의 합법적 규제주의가 성거래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거래를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2002년 매춘합법화 조치는 매춘을 하나의 선택적 삶의 방식으로 인정하고, ..중략...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살아갈 권리를 인정하면 이들을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로 인정하는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²⁴⁾ 존 바이드만도 성매매를 특별한 인권문제라고 명명하게 될 때 가지는 한계로 “가사노동이나 식당 노동같이 여성적이고 위험하며 지위가 낮은 다른 형태의 노동 또는 공장이나 들판에서 하는 노동과 성노동사이의 구별을 강조” 하고 구별은 공유된 착취의 경험을 은폐한다며 고용이나 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성매매를 성노동이라 명명하면 이 노동 역시 인권이나 여성의 권리, 노동권에 관한 주류의 논쟁으로 들어올 수 있다” 고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접하면서 필자는 노동자라는 정체성이 보장될 때만이 인권을 보호받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노동자로 인정되어야만 권리가 보장되는

23)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법을 위반한, 법에 포괄되지 않더라도 그의 인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불법사람은 아닌 것이다. 불법체류자라는 딱지가 가지는 사회적 상징적 효과를 고려할 때 불법노동자라고 명명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맞닿아있다. 성매매여성도 불법 사람, 불법 여성이라고 명명해서는 안 된다.

24) 이현재, 매춘에 대한 철학적 접근, 『성노동』2007, 여이연

사회보장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는가?²⁵⁾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 물어야 하지 않을까? 나아가 한국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똑 같게 적용될 수 있을까?

현행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지위는 고용관계가 분명하게 성립된 경우로 한정되어 외주와 같은 비정규직이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나 간병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물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도록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성매매여성들이 하는 행위의 대부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위가 가능한지 여부와 업주가 이를 인정할 것인지이다. 합법화한 나라에서도 많은 업주들과 여성들이 등록을 꺼려해서²⁶⁾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합법화가 답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 한국은 노동자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친기업적 문화 일 뿐 아니라 노조법의 한계가 있다.

성매매특별법에 저촉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노점상의 경우 노점상을 단속하는 어떤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노점상단속에 관한 법률은 없지만 도로 상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도로법을 위반하게 되고, 식품을 다루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고,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이 발생함에 따른 세금납부를 하지 않으니 세법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단속하는 것이다. 대부분 노점은 도로법 위반으로 철거하고 압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선후보였던 권영길 후보는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이 아닌 보호를 해야 한다며 생계형 노점상 보호를 위한 법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적도 있다. 이처럼 성매매방지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성매매여성들의 안전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하지 않을까.

또한 성매매여성 또는 성노동자들내에 다양한 층위가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복잡한

25) 자본주의사회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노동자성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사회보험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이유를 차치하고 봤을 때, 이러한 접근이 사회를 '노동패러다임'으로만 보려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서 억압받은 주체, 저항하는 주체를 모두 '노동자'로 단일화하고, 획일화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점에서 필자는 불편하다. 노동자로 호명하여 사회적 위치를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자본에 대항하는 주체는 노동자일 것이라는 단순한 설정이 주는 다른 효과는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한 주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6) 업주들은 세금부과를 꺼려하고, 성매매여성들은 자신의 직업이 드러나게 될 때 생길 낙인 때문에 꺼려한다고 한다. 합법화대열에 함께 하는 경우는 대부분 클럽 댄서들이었다.

성매매 현실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성판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판매여성들에 대한 불차별, 비범죄화가 분명해져야 한다. 발표문에서도 나왔듯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2장 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규정으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26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성매매)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는 규정을 두” 었지만 여성이 경찰과 검찰에 탈성매매나 자활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이런 법률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때로는 법상의 성매매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며 여성만 처벌 받는 경우도 있다.²⁷⁾ 법에서 성매매피해자라는 정의규정을 성행위 강요만이 아니라 성노동 과정이나 전후에 벌어진 폭력, 금품갈취의 피해를 입은 자로 넓히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 외에도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팽배한 사회에서 차별금지법²⁸⁾을 제정하는 일이다.

그 외에도 성매매실태현황 조사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현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단순 성매매실태만을 조사해서는 안 되고 여성들이 겪는 각종 폭력과 위협에 대해서도 조사하도록 강제해야한다. 그래야 그 실태를 바탕으로 보호조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²⁹⁾

27)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정의)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전문개정 2011.5.23) [시행일 : 2012.9.16]

28) 차별금지법에 포함될 차별 사유에는 22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가 있다. 이중 성매매 여성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별에 직접적, 간접적 차별 외에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는 안이 있다.

29) 제1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성매매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4>

예를 들어 실태조사에는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성매매여성이 법을 위반한 지위에 있더라도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건강에 대한 권리나 주거에 대한 권리, 거주이전에 관한 권리가 총체적으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한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14.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에서는 건강권을 보장한 4가지 요소(가용성, 수용성, 접근성, 질)를 제시한다. 접근성을 세부적으로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정보접근성이 있다. 이중 성매매여성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많이 관련된 것은 비차별과 정보접근성³⁰⁾이라 할 수 있다. 성매매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노동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콘돔사용을 거부당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구매자의 요구에 의해서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실제 성매매여성의 단속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면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한 조사,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성노동자들의 자력화를 통한 변화 피하기

성매매여성과 함께 만드는 안전가이드라인

사실 완전하게 성매매 여성이나 성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발표문에서 제안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반성매매 활동 단체, 성노동자 단체가 성매매 여성들 간의 정보를 유통시키고 그에 따른 안전지침을 만들어가는 것은 성매매여성 혹은 성노동자들의 자력화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위험대처 능력의 향상이라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4>

1.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2.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4. 성산업(性産業)의 시장 분포 및 규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6.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8. 성접대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

30) ‘비차별은 보건시간 물품 및 서비스는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소외된 인구집단에게, 법률상-사실상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없이 접근가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접근성은 건강문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구하고 입수하고 전파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정보의 접근성은 개인의 건강정보가 비밀유지의 조건하에서 다루어질 권리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성노동자들의 네트워크로 안전 지킴 만들기를 한다면 성노동자들의 인적 자원이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기술이나 업주나 성구매자에게 요구할 자신의 권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외 자신이 경험한 위협에 대처했던 방법이나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교환 등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일이다. 물론 성매매가 범죄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닐 것이다.

권리선언 만들기

그 외에도 성매매여성 혹은 성노동자권리선언을 만들어 보는 일이다. 권리선언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이라는 점에서 권위가 있는 만큼 힘이 있다. 함께 논의하면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권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권리구성과 권리선언으로 당사자들의 자존감이 커질 것이다. 또한 권리는 전체사회에 대한 메시지가기도 하며, 이후 어떤 삶의 질서를 원하는지도 말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그런 점에서 권리선언을 조직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점에서 2005년 10월에 만들어진 ‘유럽 성노동자 권리 선언’³¹⁾은 의미가 있다. 선언문에는 다음의 권리들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 선언에 명시된 권리는 유럽 성노동자들이 가장 위협에 처한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되어있다. <* 노예제 및 강제노동, 그리고 인신예속에서 자유로울 권리* 이동 및 거주지 자유를 향유할 권리* 폭력과 신체적 손상,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의 권리가 명시된 사실은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이건 아니건 간에 노예노동이나 감금, 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는 성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준다.

- * 생명권
- * 자유 및 안전보장의 권리
- * 노예제 및 강제노동, 그리고 인신예속에서 자유로울 권리
- *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훼손하는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폭력과 신체적 손상,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사생활 및 가족, 가정, 혹은 서신에 대한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개입 그리고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및 가족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
- * 이동 및 거주지 자유를 향유할 권리

31) 선언문은 2005년 10월 15-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성노동, 인권, 노동, 그리고 이주에 관한 유럽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30여개국에서 온 120여명의 성노동자와 80여 개의 동맹 단체들이 정교화하고 승인한 문서이다.

- * 그 자신의 나라를 포함해서 나라를 떠나고 그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
- * 보호시설을 이용하고 불결한 취급을 다시 받지 않을 권리
- *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받고 차별 및 차별을 차별 선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
- * 노동하고, 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의롭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향유하고,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 가능한 최대한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로운 회합 및 결사의 권리
- * 조직화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 * 서류를 갖춘 이주자와 갖추지 못한 이주자 모두를 위한 정보의 권리
- * 효과적인 반차별 조치에 대한 권리
- * 사회의 문화 및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 * 한쪽 성의 열등함 혹은 우월함이라는 아이디어나 남성과 여성의 스테레오타입화한 역할에 근거한 편견과, 관습 및 여타의 실행과 전투를 벌여야 할 국가의 의무

나오면서

작년 10회 아시아태평양지역 에이즈대회에 참석하고 아직까지 고민이 정리되지 않았다. 섹스워커 섹션에 잠시 참여했을 때, 느낀 당황스러움이 여전하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 인가가 흐트러져, 그/녀들의 인권을 어떻게 옹호할 것인지의 큰 방향성을 그리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동요와 흔들림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다시 새롭게 ‘성매매-성노동’을 보게 되고 그 안의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뀐 게 조금 있다. 성매매냐, 성노동이냐는 개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된 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녀들의 삶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매매여성 또는 성노동자들내에 다양한 층위가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특정한 목소리만을 대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쉽지 않을 거 같다.

* 참고 문헌

여이연 성노동팀, 『성노동』, 2007. 여이연


우에노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2012, 은행나무

낸시 홈스트롬, 『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달다』, 2012, 메이데이

희망공감-희망인터뷰,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가, 메일루셀 설리반 여성과인권, (대담)성매매합법화 그 속에 감추어진 진실, 2008.

사회진보연대, 『성매매방지법 1년 평가와 성노동자운동의 전망』, 2005

호주 인신매매관련 전국회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돕는 NGO를 위한 지침서, 2010.


 초대합니다.

2012 이름기획포럼
새 로 고 침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공모관계,
해체는 불가능한가

- 일 시 : 2012년 7월 1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발제 : 표정선(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성매매와 사채시장의 관계변화에 대한 사례분석과 논의”
- 토론 : 김주희(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송태경(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

 이름 수익사업합니다. 도와주세요. ‘_’

아끼고 아끼면서 알뜰살뜰 산다해도 워낙에 없는 살림이다 보니 이름은 늘 보릿고개입니다. OTL;;

해마다 CMS후원과 여러 도움을 통해 간당간당 보릿고개를 넘기고 있지만 올해에는 큰 맘먹고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수익사업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천연아카시아꿀(설탕은 1g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2.4kg 1병 **50,000원**(택배비 포함)

농협 301-0020-2497-61 예금주_반성매매인권행동이름

문의 **_02-962-6279** eloom2003@naver.com강릉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어떤 곳인가요?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활동, 성매매 현장의 다층적인 문제와 고민을 연구하고 이를 대중 캠페인, 자료발간, 포럼, 강의교육 등의 활동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상담, 긴급구조, 법률지원, 의료지원, 쉼터 연계, 심리상담 연계 등이며 성매매 현장의 권리 침해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성매매 현실을 바로 알리고 성매매 문화를 바꿔 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룸의 발간물

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보고서(2007)

성매매 백과사전, 인터넷에 끼어들기(2008)

성판매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2009)

청량리집결지 기록화 작업-불온한 확산, 끝나지 않은 천일야화(2010)

루머 종결자들 : 성매매를 말하는 서른 개의 목소리(2012)

-언니들을 위한 발간물

희망충전 100%를 위한 2%의 용기

희망충전 100%를 위한 2%의 지혜

유형업 종사자를 위한 '별별신문' 발행

이룸의 다양한 활동과 소식, 별별신문 전문은 이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e-loom.org ■ 이 메 일 eloom2003@naver.com

■ 주 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232-12 5층

■ 전 화 02-953-6280 ■ 팩 스 02-953-6281